

다음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A)이 **LottoWin**을 이용 중 미국(B), 스페인(C), 이탈리아(D)의 복권에 당첨되어 거액을 받게 되었을 때를 가정한 최종 단계별 시나리오입니다. 전제는 모두 합법적 신고·원천징수·거주지 이전을 하는 구조이며, 이것이 유일무이한 대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 중의 하나로서 실행 설계 초안입니다.

# EU 국가인 조지아(**Georgia**) 기반 당첨금 수령 시나리오

## 0. 최종 전제

A는 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였으나, B·C·D 청구권 행사 또는 권리보전 절차 전에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나 조지아로 생활 근거지를 옮긴다. A의 현재 자산은 약 10만 달러이고, 조지아에서 임대차계약, 현지 은행계좌, 전화번호, 체류기록, 생활비 지출기록, 세무번호 또는 납세자 등록 등 실질 거주 증빙을 만든다.

조지아는 한국 국민이 무비자로 1년 체류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Republic of Korea**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목록 국가 국민은 조지아에 무비자로 1년간 입국·체류할 수 있다.

조지아 세법상 개인은 연속 12개월 기간 중 183일 이상 조지아에 실제 체류하고 그 기간이 해당 과세연도에 끝나면, 그 과세연도 전체의 조지아 거주자로 인정된다. 하루 중 일부만 조지아에 있어도 체류일로 계산된다.

조지아 거주 개인은 조지아 원천이 아닌 소득에 대해 과세 면제되는 구조다. 다만 조지아 원천소득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조지아 세법은 조지아에서 제공된 서비스, 조지아 거주자가 제공한 특정 서비스, 조지아 내 활동, 조지아 거주자가 지급하는 이자·로열티 등 여러 항목을 조지아 원천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A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조지아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다.

1. 한국 생활근거를 실질적으로 정리한다.
2. 조지아에서 실제 생활근거와 체류일수 183일을 확보한다.
3. B/C/D 지급금이 조지아 내 경제활동과 무관한 비조지아 원천소득이라는 의견을 확보한다.
4. C/D의 경우, 90일 내 권리보전 절차와 실제 수표 발급 시점을 분리하여, 가능하면 수표 발급일·원천세 처리일·지급문서 유효일을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화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와 일치시킨다.

특히 C/D에서 조지아 입국 시점 때문에 183일 달성이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가는 경우, A는 90일 내에 권리소멸 방지를 위한 청구 또는 접수만 먼저 하고, 실제 은행 방문, 본인확인,

원천세 처리, 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발급은 다음 과세연도에 진행하는 구조를 우선 검토한다. 이 경우 2027년에 단지 “받을 수 있었음”과 2028년에 실제 “수표가 발급되어 지급문서가 유효해졌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1. 세 시나리오의 최종 분류

시나리오	청구 기한	최종 전략	위험도
B: 미국	1년 이내	조지아 183일 충족 후 청구. B국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되고, 조지아 내 경제활동과 무관한 금액으로 정리한다.	가장 낮음
C: 스페인	90일 이내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 또는 접수 → 가능하면 다음 과세연도에 은행 방문·본인확인·원천세 처리·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발급 → 조지아 183일 충족 후 추심	낮음, 단 문서화 필수
D: 이탈리아	90일 이내	C와 동일. 90일 내 권리보전과 실제 지급문서 발급 시점을 분리한다.	낮음, 단 문서화 필수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다.

B는 1년의 여유가 있으므로, A가 조지아에서 183일을 먼저 충족하고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확보한 뒤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B는 “183일 이후 청구형”이며, 세 시나리오 중 가장 구조가 단순하고 방어력이 높다.

반면 C/D는 90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조지아 183일을 기다린 뒤 처음부터 청구하는 방식은 어렵다. 다만 C/D는 “청구”와 “수표 발급”을 반드시 같은 시점으로 보지 않고, 가능한 경우 두 절차를 분리한다. 즉, 90일 안에는 권리보전 청구 또는 접수만 하고, 실제 은행 방문, 본인확인, 원천세 처리, 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발급은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화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맞춘다.

따라서 최종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B는 “조지아 183일 이후 청구형”이다.

C/D는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 + 조지아 거주자화 과세연도에 수표 발급 + 183일 이후 추심형”이다.

C/D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 자체보다, 실제 지급수단의 발급일과 원천세 처리일이다. A가 2027년에 조지아에 입국했지만 183일 달성이 2028년으로 넘어가는 경우, 2027년에는 권리보전만 하고, 2028년에 Pay to the Order of A 수표가 처음 발급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수표 발급일, 원천세 처리일, 지급문서 유효일,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 적용 과세연도가 모두 2028년으로 정렬되면 C/D 시나리오의 “갈라질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단, C/D에서 이 구조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문서가 필요하다.

1. 90일 내 절차는 권리 소멸 방지를 위한 청구 또는 접수였다는 확인
2. 2027년에는 A에게 수표, 지급증서, 양도 가능한 금융상품, 계좌입금이 없었다는 확인
3. Pay to the Order of A 수표가 2028년에 처음 발급되었다는 확인
4. 해당 수표의 법적 발행일과 지급문서 유효일이 2028년이라는 확인
5. 원천세 계산·공제·증명서 발급일이 2028년이라는 확인
6. 수표 발급 전에는 A가 해당 금액을 사용·처분·인출할 수 없었다는 확인
7. 조지아 세무전문가의 “A는 2028년 전체에 대해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이며, C/D 지급금은 조지아 원천소득이 아니다”라는 의견서
8. 한국 세무전문가의 “A는 해당 지급시점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고,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만으로 한국 거주자 시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

이 수정 후에는 C/D 시나리오를 단순히 “90일 내 청구 후 183일 후 추심”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C/D는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를 하되, 실제 지급수단인 Pay to the Order of A 수표의 발급일과 원천세 처리일을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화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맞추고, 183일 달성 후 추심하는 구조다.

---

## 2. 공통 준비 단계

### 2.1 한국 출국 전

A는 한국에서 단순히 “해외에 나갔다”가 아니라 한국 생활근거를 실질적으로 종료했다는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거주자 판단에서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직업,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며, 해외 체류가 있더라도 가족·재산 등 일반 생활관계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taxsummaries.pwc.com](https://taxsummaries.pwc.com))

출국 전 준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목적
한국 주거 정리 또는 장기 임대·매각 자료	한국 주소성 약화
가족 동반 출국 자료	생활중심 이전 입증
한국 고용·사업·상시소득 종료 자료	한국 경제활동 단절
한국 체류일수 관리표	한국 거주자성 방어
B/C/D 권리 발생시점 법률의견서	“청구 후 발생” 또는 “권리행사 후 확정” 입증
지급금 성격 의견서	조지아 원천소득이 아님을 입증
영문 자금출처·신분·가족관계 서류	은행 KYC 대비

## 2.2 조지아 입국 직후

입국일을 **Day 0**으로 두고, **A**는 즉시 아래를 진행합니다.

시점	조치
Day 0~7	장기 임대차계약, 주소 확보
Day 0~14	현지 전화번호, 인터넷, 생활비 결제수단 확보
Day 0~30	조지아 은행계좌 개설, 세무번호 또는 납세자 등록 확인
Day 0~60	의료보험, 공과금, 카드 사용기록, 가족 생활기록 축적
Day 0~183	조지아 체류일수 183일 이상 확보

중요한 점은 조지아에서 관광객처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 카드 사용, 공과금, 전화요금, 학교·의료·보험 자료, 출입국 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

## 3. B: 미국 청구 시나리오 — 최상 구조

### 3.1 B 시나리오의 핵심

B는 1년 이내 청구하면 권리가 유효하므로, A는 조지아에서 먼저 183일을 채우고, 조지아 세금거주자 지위를 확보한 뒤 미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수정한 전제상 B 지급금은 “B국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되고, 조지아 내 경제활동과 무관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B 지급금은 조지아에서 수행한 용역, 조지아 내 사업, 조지아 원천 권리, 조지아 거주자 지급금과 연결되지 않는 비조지아 원천소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특정 미국원천 FDAP 소득은 통상 30% 원천징수 대상이고, IRS도 FDAP income은 30% 또는 낮은 조약세율로 과세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 3.2 B 단계별 일정

단계	시점	행동	목적
1	Day -60~0	한국 생활근거 정리, 가족 동반 출국, 조지아 입국	한국 비거주자 전환 준비
2	Day 0~30	조지아 거주 기반 구축	실질 거주 증빙
3	Day 1~182	B 청구 보류	소득 발생·청구를 조지아 거주자화 이후로 미룸
4	Day 183 이후	조지아 세금거주자성 확인, 세무의견서 확보	해당 과세연도 전체 조지아 거주자 논리 확보
5	Day 190~230	B 지급금의 비조지아 원천성 의견서, 미국 원천징수 방식 확인	조지아 추가세 방어

6	Day 200 이후	미국 B에 정식 청구	1년 청구기한 내 권리 행사
7	지급 시	미국 30% 원천징수 후 조지아 또는 국제은행 계좌로 수령	미국 세금 처리 및 자금화
8	수령 후	조지아 신고 또는 비과세 입증자료 보관	사후 세무 방어

### 3.3 B 시나리오 최종 평가

B는 가장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청구, 지급확정, 원천징수, 수령이 모두 조지아 **183일**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A의 방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A는 한국을 떠나 가족과 함께 조지아로 생활 근거지를 이전했다.
- 조지아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여 해당 과세연도 전체의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
- B 지급금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금액이며, 조지아 내 경제활동과 무관한 비조지아 원천소득이다.
- 따라서 조지아에서 추가 소득세가 없거나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다.

## 4. C: 스페인 청구 시나리오 — 90일 내 권리보전 + 지급시점 조정형

### 4.1 C 시나리오의 핵심

C는 90일 안에 권리 소멸 방지를 위한 청구 또는 접수를 해야 한다. 따라서 A가 조지아에 입국한 뒤 183일을 완전히 기다렸다가 처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90일 내 청구”와 “즉시 원천세 처리·수표 발급”을 반드시 같은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C 시나리오에서는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절차를 분리한다.

- 조지아로 먼저 완전 이주 → 90일 안에 C에서 권리보전 청구 또는 접수 → 실제 은행 방문·본인확인·KYC·원천세 처리·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발급은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맞춤 → 조지아 183일 충족 → 조지아 세금거주자 증빙과 비조지아 원천소득 의견서 확보 → 수표 추심.

특히 A가 조지아에 늦게 입국하여 183일 달성이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C에서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만 먼저 하고, 실제 수표 발급일·원천세 처리일·지급문서 유효일은 다음 과세연도로 맞추는 구조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2027년 10월 조지아에 입국했고 183일 달성이 2028년 4월경이라면, 2027년에 C에서 수표를 발급받는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2027년에는 권리보전 청구 또는 접수만 하고, 2028년에 C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KYC, 원천세 처리, 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발급을 진행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다.

스페인 공식 안내 기준으로 고액 상금은 지정 절차, 신원확인, 추가 KYC, 원천징수증명서 발급 가능성이 있고, 일정한 경우 승인 금융기관에서 절차를 밟는다. SELAE 안내는 대형 상금이 40,000유로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20% 세금이 적용되고, 원천징수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스페인 세무청도 비거주자의 해당 상금은 특별세로 과세되고, 원천징수 또는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 신고의무가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 4.2 C 단계별 일정

시점	행동	목적
Day -60~0	한국 생활근거 정리 후 가족과 조지아 입국	한국 거주자성 약화
Day 0~30	조지아 임대차·은행·전화·생 활기록 구축	조지아 실거주 시작
Day 1~90	C 지정은행 또는 지정 절차로 권리보전 청구 또는 접수	90일 청구기한 내 권리 소멸 방지

Day 1~90	가능하면 “권리보전 접수”와 “지급 실행”을 문서상 분리	2027년 소득실현 주장 차단
조지아 거주자화 과세연도	C 은행 방문, 본인확인, KYC, 지급심사 진행	실제 지급절차 개시
조지아 거주자화 과세연도	C 원천세 처리, 원천징수증명서 확보	C 세금 처리
조지아 거주자화 과세연도	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발급	최초 지급수단 확보
Day 183 이후	조지아 세금거주자성 확인, 세무의견서 확보	해당 과세연도 전체 거주자 논리
Day 183 이후	조지아 은행 또는 국제은행에 수표 추심 의뢰	자금화
추심 후	원천징수증명서, 수표 사본, 은행 KYC 자료 보관	사후 세무 방어

### 4.3 C 시나리오의 핵심 논리

C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는 “수표를 183일 뒤에 추심했으니 소득도 183일 뒤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논리만으로는 약하다. 세무당국은 수표 발급일, 지급확정일, 원천세 처리일, 또는 권리 청구 승인일을 소득 실현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C의 안전 논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A는 C에서 권리보전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한국 생활근거를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조지아에 실제 이주했다.

둘째, C에서 90일 안에 진행한 행위는 권리 소멸 방지를 위한 청구 또는 접수이며, 그 자체로 A가 사용·처분 가능한 금융자산을 받은 것은 아니다.

셋째, A 명의의 Pay to the Order 수표는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화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처음 발급되었다.

넷째, 수표 발급일, 원천세 처리일, 지급문서 유효일,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 적용 과세연도가 서로 일치한다.

다섯째, C 지급금은 스페인에서 원천세 처리된 외국 지급금이고, 조지아 내 경제활동·용역·사업·자문·중개·금융서비스와 무관하므로 비조지아 원천소득이라는 의견을 확보한다.

따라서 C 시나리오의 주된 방어논리는 단순히 “수표 추심일이 늦다”가 아니다. 더 정확한 방어논리는 다음과 같다.

90일 내 청구는 권리보전 절차였고, 실제 지급수단인 Pay to the Order of A 수표는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화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처음 발급되었다. A는 같은 과세연도에 조지아 183일 요건을 충족했으며, C 지급금은 조지아 내 경제활동과 무관한 비조지아 원천소득이다.

### 4.4 C 시나리오에서 반드시 확보할 문서

A는 C 지급기관 또는 은행으로부터 다음 취지의 문서를 확보해야 한다.

1. 90일 내 절차는 권리 소멸 방지를 위한 청구 또는 접수였다는 확인
2. 그 시점에는 A에게 수표, 지급증서, 양도 가능한 금융상품, 계좌입금이 없었다는 확인
3. Pay to the Order of A 수표가 조지아 거주자화 과세연도에 처음 발급되었다는 확인
4. 해당 수표의 법적 발행일과 지급문서 유효일이 해당 과세연도라는 확인
5. 원천세 계산·공제·증명서 발급일이 해당 과세연도라는 확인
6. 수표 발급 전에는 A가 해당 금액을 사용·처분·인출할 수 없었다는 확인

조지아 세무전문가에게는 다음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A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지아 183일 요건을 충족하여 그 과세연도 전체의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라는 의견
2. C 지급금이 조지아 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의견

한국 세무전문가에게는 다음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A가 C 지급시점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2. C의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만으로 한국 거주자 시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지
3. 실제 지급수단 발급일과 원천세 처리일을 소득 실현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 5. D: 이탈리아 청구 시나리오 — C와 동일한 권리보전 + 지급시점 조정형

### 5.1 D 시나리오의 핵심

D도 90일 안에 권리 소멸 방지를 위한 청구 또는 접수를 해야 하므로, 기본 구조는 C와 같다. 다만 D의 세부 지급방식은 실제 게임·권리·지급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사용자의 전제처럼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가 가능하고, 실제 지급은 원천세 처리 후 수표 또는 지급증서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구조로 놓고 설계한다.

수정된 D 구조는 다음과 같다.

조지아로 먼저 완전 이주 → 90일 안에 D에서 권리보전 청구 또는 접수 → 실제 은행 방문·본인확인·KYC·원천세 처리·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또는 지급증서 발급은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화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맞춤 → 조지아 183일 충족 → 조지아 세금거주자 증빙과 비조지아 원천소득 의견서 확보 → 수표 또는 지급증서 추심.

D에서도 A가 조지아에 늦게 입국하여 183일 달성이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와 실제 지급문서 발급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7년에 권리보전만 하고, 2028년에 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문서가 처음 발급되도록 설계하면, 지급문서 유효일과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화 과세연도를 맞출 수 있다.

이탈리아 SuperEnalotto류 공개 안내에서는 90일 청구기한과 20% 원천과세 구조가 안내된다. 다만 실제 D 권리의 종류가 다르면 반드시 해당 공식 약관, 지급기관 규정, 세무처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5.2 D 단계별 일정

시점	행동	목적
Day -60~0	한국 생활근거 정리 후 가족과 조지아 입국	한국 비거주자 전환 준비
Day 0~30	조지아 실거주 기반 구축	체류·주소 ·생활 증빙
Day 1~90	D 지급기관 또는 지정은행을 통해 권리보전 청구 또는 접수	90일 권리 소멸 방지
Day 1~90	가능하면 “권리보전 접수”와 “지급 실행”을 문서상 분리	지급시점 과세연도 조정
조지아 거주자화 과세연도	D 은행 또는 지급기관 방문, 본인확인, KYC, 지급심사 진행	실제 지급절차 개시
조지아 거주자화 과세연도	D 원천세 처리, 지급확정서·원천세 자료 확보	D 세금 처리
조지아 거주자화 과세연도	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또는 지급증서 발급	최초 지급수단 확보

Day 183 이후	조지아 세금거주자 의견서·증빙 확보	해당 과세연도 전체 거주자 논리
Day 183 이후	조지아 은행 또는 국제은행을 통해 추심	자금화
추심 후	D 원천징수증명서, 지급서류, 은행자료 보관	사후 방어

### 5.3 D 시나리오의 핵심 논리

D도 C와 동일하게 “수표를 늦게 추심했으니 소득도 늦게 발생했다”는 논리만으로는 약하다. D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지급문서가 언제 처음 발급되었는지, 그 지급문서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지, 원천세가 언제 계산·공제되었는지다.

따라서 D의 안전 논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첫째, A는 D에서 권리보전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한국 생활근거를 정리하고 가족과 조지아에 실제 이주했다.

둘째, D에서 90일 안에 진행한 절차는 권리 소멸 방지를 위한 청구 또는 접수였고, A가 그 시점에 사용·처분 가능한 금융자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셋째, A 명의의 수표 또는 지급증서는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화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처음 발급되었다.

넷째, 수표 또는 지급증서 발급일, 원천세 처리일, 지급문서 유효일,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 적용 과세연도가 서로 일치한다.

다섯째, D 지급금은 조지아 내 용역·사업·권리·자문·중개·금융서비스와 무관한 외국 지급금이고, D에서 원천세가 처리된 금액이다.

따라서 D 시나리오의 주된 방어논리는 다음과 같다.

90일 내 청구는 권리보전 절차였고, 실제 지급수단은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화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처음 발급되었다. A는 같은 과세연도에 조지아 183일

요건을 충족했으며, D 지급금은 조지아 내 경제활동과 무관한 비조지아 원천소득이다.

#### 5.4 D 시나리오에서 반드시 확보할 문서

A는 D 지급기관 또는 은행으로부터 다음 취지의 문서를 확보해야 한다.

1. 90일 내 절차는 권리 소멸 방지를 위한 청구 또는 접수였다는 확인
2. 그 시점에는 A에게 수표, 지급증서, 양도 가능한 금융상품, 계좌입금이 없었다는 확인
3. 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문서가 조지아 거주자와 과세연도에 처음 발급되었다는 확인
4. 해당 수표 또는 지급문서의 법적 발행일과 유효일이 해당 과세연도라는 확인
5. 원천세 계산·공제·증명서 발급일이 해당 과세연도라는 확인
6. 지급문서 발급 전에는 A가 해당 금액을 사용·처분·인출할 수 없었다는 확인

조지아 세무전문가에게는 다음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A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지아 183일 요건을 충족하여 그 과세연도 전체의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라는 의견
2. D 지급금이 조지아 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의견

한국 세무전문가에게는 다음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A가 D 지급시점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2. D의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만으로 한국 거주자 시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지
3. 실제 지급수단 발급일과 원천세 처리일을 소득 실현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

## 6. C/D 시나리오: 183일 달성이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가는 경우

### 6.1 원칙

A가 조지아에 입국한 날짜가 늦어, 조지아 183일 달성이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C/D 시나리오를 다음처럼 한다.

2027년 조지아 입국 → 2027년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 또는 접수 → 2028년 은행 방문·본인확인·원천세 처리·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발급 → 2028년 조지아 183일 달성 → 2028년 조지아 세금거주자 증빙 확보 → 2028년 수표 추심

이 구조의 핵심은 2027년에 A가 실제 수표, 지급증서, 양도 가능한 금융상품, 또는 사용·처분 가능한 자금을 받지 않는 것이다.

## 6.2 C/D 권리보전과 지급 실행을 분리한다

C/D는 90일 안에 권리 소멸 방지를 위해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청구가 반드시 즉시 수표 발급까지 이어질 필요가 없다면,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는 권리보전 단계다.

A는 2027년 90일 기한 안에 C/D 지급기관 또는 지정은행에 권리보전 청구, 접수, 본인확인 예약, 지급절차 개시, 또는 기타 소멸 방지 행위를 한다. 이때 문서상 목적은 “권리 소멸 방지”와 “지급심사 개시”로 한정한다.

두 번째는 지급 실행 단계다.

A는 2028년 이후 C/D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KYC, 원천세 처리, 지급확정, 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발급을 진행한다. 이때 수표 발급일과 원천세 처리일은 모두 2028년이 되도록 한다.

## 6.3 날짜 예시

항목	날짜 예시	세무상 의미
조지아 입국	2027년 10월	한국 생활근거 이전 시작
C/D 권리 발생	2027년 11~12월	90일 청구기한 시작
C/D 권리보전 청구	2027년 12월	권리 소멸 방지, 지급 실행은 아직 아님

C/D 은행 방문	2028년 1월 이후	본인확인·KYC·지급절차 진행
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발급	2028년 1월 이후	최초 지급수단 발생
조지아 183일 달성	2028년 4월경	2028년 전체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 논리
수표 추심	2028년 4월 이후, 가능하면 세무의견서 확보 후	자금화 및 은행 KYC 처리

## 6.4 이 구조의 세무 논리

이 시나리오에서 A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A는 2027년에 이미 가족과 함께 조지아로 이주했고, 한국 생활근거를 정리했다. C/D 권리와 관련해서는 90일 내 권리소멸을 막기 위한 접수 또는 청구만 진행했다. 그러나 2027년에는 A 명의의 수표, 지급증서, 계좌입금, 양도 가능한 금융상품, 또는 사용·처분 가능한 자금을 받지 않았다.

실제 지급절차는 2028년에 이루어졌다. A는 2028년에 C/D 은행을 방문했고, 은행은 2028년 날짜로 본인확인, 원천세 처리, 지급확정, 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발급을 진행했다. 따라서 지급문서의 법적 유효일은 2028년이다.

A는 2028년 4월경 조지아 체류 183일을 달성했다. 조지아 세법상 이 경우 A는 2028년 과세연도 전체의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 C/D 지급금은 조지아 내 경제활동, 용역, 사업, 자문, 중개, 금융서비스와 무관한 외국 지급금이고, C/D에서 원천세가 처리된 금액이다. 따라서 조지아에서는 비조지아 원천소득으로 보아 추가 과세가 없거나 낮은 의견을 확보한다.

## 6.5 반드시 확보해야 할 문서

A는 C/D 지급기관 또는 은행에서 다음 취지의 문서를 받아야 한다.

- 2027년 절차는 권리 소멸 방지를 위한 접수 또는 청구였다는 확인
- 2027년에는 A에게 수표, 지급증서, 계좌입금, 양도 가능한 금융상품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확인

- A 명의의 Pay to the Order 수표는 2028년에 처음 발급되었다는 확인
- 해당 수표의 법적 발행일과 지급문서 유효일이 2028년이라는 확인
- 원천세 계산·공제·증명서 발급일이 2028년이라는 확인
- 수표 발급 전에는 A가 해당 자금을 사용·처분·인출할 수 없었다는 확인

조지아 세무전문가에게는 다음 두 가지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1. A는 2028년에 183일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2028년 전체에 대해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라는 의견
2. C/D 지급금은 조지아 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의견

한국 세무전문가에게는 다음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A가 2027년 10월 이후 한국 생활근거를 정리하고 가족과 조지아로 이주했으므로, C/D 지급시점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2. 2027년 권리보전 청구가 한국 거주자 시절의 소득 실현으로 볼 수 없는지
3. 2028년 수표 발급 및 지급확정이 실제 소득 실현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6.6 위험도 평가

이 구조는 방어력이 높아진다.

2027년 권리보전만 진행 → 2028년 수표 발급 → 2028년 조지아 거주자화

이 경우 실제 지급문서의 발급일, 원천세 처리일, 조지아 거주자화 과세연도가 모두 2028년으로 맞춰진다.

단, 이 구조가 성립하려면 2027년에 A가 이미 사용·처분 가능한 금융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2027년에 단지 “받을 수 있었음”과 2027년에 “이미 받은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 6.7 최종 정리

C/D에서 조지아 입국일 때문에 183일 달성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 A는 2027년에 수표를 발급받으면 안 된다. 2027년에는 권리보전 청구 또는 접수만 하고, 실제 지급절차와 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발급은 2028년에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C/D 지급금의 실현시점, 수표 발급일, 원천세 처리일,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 적용 과세연도를 모두 2028년으로 맞출 수 있다.

따라서 하반기 당첨의 경우 C/D 실행안은 다음과 같다.

조지아 입국이 늦어 183일 달성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 C/D는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만 하고, 실제 은행 방문·본인확인·원천세 처리·Pay to the Order of A 수표 발급은 다음 해에 진행한다. 이후 같은 해에 조지아 183일을 달성하고, 조지아 세금거주자 의견서와 비조지아 원천소득 의견서를 확보한 뒤 수표를 추심한다.

C/D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표 발급연도와 조지아 183일 달성연도가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안전한 예시

항목	날짜 예시
조지아 입국	2027년 1월 1일
C/D 권리 발생	2027년 1~2월
C/D 청구	2027년 3월 말 전
수표 발급	2027년 2~4월
조지아 183일 달성	2027년 7월 초
수표 추심	2027년 7월 이후
세무 논리	A는 2027년 과세연도 전체의 조지아 거주자

## 위험한 예시

항목	날짜 예시
조지아 입국	2027년 10월

C/D 청구	2027년 12월
수표 발급	2028년 1월
조지아 183일 달성	2028년 4월
수표 추심	2028년 4월 이후
문제	수표 발급·소득실현은 2027년, 조지아 거주자화는 2028년으로 갈라질 위험

따라서 A는 C/D 가능성이 있다면 가급적 연초에 조지아로 출국해야 합니다. C/D는 “183일 후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같은 과세연도 안에 **183일**을 완성하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 7. 최종 통합 실행안

### Phase 1: 한국 정리 및 조지아 이주

단계	행동
1	한국 주거·사업·고용·생활근거 정리
2	가족 동반 조지아 출국
3	조지아 장기 임대차계약 체결
4	현지 은행계좌, 전화번호, 생활비 결제기록 확보
5	한국 체류 최소화 및 출입국 기록 보관

이 단계의 목적은 한국이 A를 계속 한국 거주자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측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자료는 가족 동반, 한국 생활관계 종료, 조지아 실거주 기록입니다.

---

## Phase 2: B/C/D 권리별 대응

권리	대응
<b>B</b> 미국	아무리 빨라도 조지아 183일 이후 청구
<b>C</b> 스페인	90일 내 청구, 원천세 처리 수표 수령, 183일 이후 추심
<b>D</b> 이탈리아	90일 내 청구, 원천세 처리 수표 또는 지급증서 수령, 183일 이후 추심

B는 조지아 거주자화 이후 청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C/D는 권리 소멸 방지를 위해 90일 안에 청구하되, 수표를 즉시 현금화하지 않고 조지아 세금거주자 지위 확보 후 추심합니다.

---

## Phase 3: 183일 달성 후 세무문서 확보

Day 183 이후 A가 반드시 받아야 할 문서는 다음입니다.

문서	목적
조지아 세금거주자 확인 또는 세무의견서	해당 과세연도 전체 조지아 거주자성
B/C/D 지급금의 비조지아 원천소득 의견서	조지아 추가세 방어
한국 비거주자 의견서	한국 추가과세 방어
B/C/D 원천징수증명서	외국 세금 처리 증빙
은행 KYC 승인자료	자금세탁방지·자금출처 증빙

특히 C/D의 경우, 세무의견서에는 반드시 다음 문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C/D 지급금은 A가 조지아에서 제공한 용역, 사업활동, 자문, 중개, 관리, 금융·보험 서비스의 대가가 아니라, C/D 법률 또는 지급기관 규정에 따라 C/D에서 발생하고 C/D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지급금이다.

---

## Phase 4: 수령·추심·사후신고

시나리오	수령 방식	사후조치
B	미국 원천징수 후 계좌 송금	조지아 비조지아 원천소득 자료 보관
C	스페인 원천세 처리 수표를 183일 후 추심	수표 사본, 원천징수증명서, 은행 추심자료 보관
D	이탈리아 원천세 처리 수표/지급증서를 183일 후 추심	지급증명서, 원천세 자료, 은행 추심자료 보관

조지아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A는 신고 여부를 조지아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와 “아무 문서도 필요 없음”은 다릅니다.

---

## 8. 최종 위험도 평가

### B: 최상

B는 청구기한이 1년이므로 A가 조지아 183일을 먼저 채우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정한 전제상 B 지급금은 B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되고, 조지아 내 경제활동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조지아 비조지아 원천소득 논리가 가장 강합니다.

평가: 가장 추천.

## C: 조건부 가능

C는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183일 전 수표 발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표 발급일과 조지아 183일 달성일이 같은 과세연도에 있으면, 조지아의 “해당 과세연도 전체 거주자” 논리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평가: 가능하지만, 수표 추심일만 믿으면 위험. 같은 과세연도 설계가 필수.

## D: 조건부 가능

D는 C와 동일합니다.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를 하고, 원천세 처리된 지급증서 또는 수표를 보관한 뒤, 조지아 183일 후 추심합니다.

평가: C와 동일. 같은 과세연도 내 183일 달성이 핵심.

---

## 9. 최종 요약

최선은 미국 B 시나리오다. B는 1년 안에 청구하면 되므로, A가 먼저 한국 생활근거를 정리하고 가족과 조지아로 이주한 뒤 183일 이상 체류하여 조지아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확보하고, 그 후 미국에 청구하면 된다. B 지급금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되고 조지아 내 경제활동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조지아에서는 비조지아 원천소득으로 볼 여지가 가장 크다.

스페인 C와 이탈리아 D는 둘 다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조지아 183일 전에 청구와 수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수표를 183일 이후에 추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세무상 핵심은 추심일이 아니라 조지아의 과세연도 전체 거주자 규정이다. 즉, C/D 수표 발급일과 조지아 183일 달성일이 같은 과세연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

따라서 최종 설계는 B는 183일 이후 청구, C/D는 90일 내 권리보전 청구 후 183일 이후 추심이다. 모든 경우에 한국 비거주자 의견서, 조지아 세금거주자 의견서, 지급금의 비조지아 원천소득 의견서, B/C/D 원천징수증명서, 은행 KYC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한 줄 결론은 이렇습니다.

B는 실행 최적안, C/D는 같은 조지아 과세연도 안에 183일을 완성한다는 조건부 실행안입니다.